◉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4 중 "제2조제4호"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7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제47조의2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가축 사육시설은"을 "축사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오염"을 "오염과 악취발생"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축사에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퇴비화시설 내 축분(畜糞)의 함수율(含水率)은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의3 제1호아목 중 "사육시설 또는"을 "사육시설을 갖추고"로,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차.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 있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의3 제2호가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종돈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높이 가 1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종돈 사육시설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시설란 (1)에 따른 장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 4) 종돈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악취저감의 효과 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할 것

별표 3의3 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의 여건상 일정 기간 분뇨의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 1)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되, 높이가 1 미터를 초과하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임시분뇨보관시설 높이의 80퍼센트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다. 다만,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영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악취저 감 장비·시설란 (1)에 따른 장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분뇨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 사.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 1)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악취저 감 장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악취저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할 것

별표 3의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적(20점), 교육실행 능력 (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기준		평가점수
시설		실습 교육장 보유 여부(10)	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시설 (200㎡ 이상)의 보유(임차한 경 우를 포함한다) 여부	보유(10) 보유하지 않음(0)	
현황 (30)	교육장 시설 (30)	이론 교육장 보유 여부(15)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실(60㎡ 이 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 한다) 여부		
		교육장 접근성(5)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5) 보통(3)	
	교육지원 인력 (20)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사 인력은 제외) 보유 수	3명 이상(20) 2명(15) 1명(10)	
	교육실적	3년간 교육 횟수(10)	3년간 교육 실시 횟수	10회 이상(10) 5회 이상(8) 5회 미만(6) 없음(0)	
교육 역량 (70)	(20)	3년간 교육 인원 (10)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500명 이상(10) 300명 이상(5) 300명 미만(3) 없음(0)	
(1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우수(10) 보통(5)	
	교육실행 능력	운영조직의 체계성(10)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우수(10) 보통(5)	
	(30)	강사 인력 보유 수(10)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2명 이상(10) 1명 이상 보유(5) 1명 미만 보유(0)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 등록자"를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말 도체: 좌·우 반도체의 등심 부위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위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심 주변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검토 및 확인"을 "검토 및 현장 확인"으로 한다.

처리기간 15일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란의 납입물량란, 같은 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란의 납입물량란 및 같은 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란의 납입물량란을 각각다음과 같이 한다.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 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6 제2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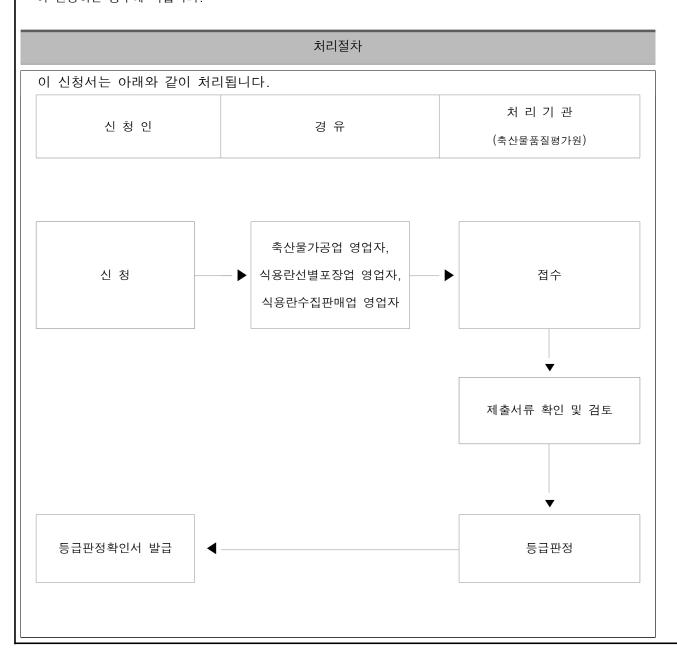
제3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축산법 시행	규칙 [별지 제37호		계란) 등급	파저시	처시			
	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C/ 5 H	28 2		ᄓᄓᄓᅠᅐᅬ	(앞쪽)	
접수번호	1	접수일 			Α.	l리기간 즉시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u>5</u>)	
신청인	③업소명							
	④ 주소							
				(전	헌화번호:)	
 축산물가공	⑤업체명				⑥사업자등	 루번호		
영업소,								
식용란선별	①대표자							
포장업소,								
식용란수집	⑧소재지							
판매업소				(<i>⊼</i>	선화번호:)	
	9성명			()		사업자 등록번	<u> </u>	
사육	⑪농장명				⑩농장식별번호			
농가	⑬주소							
	(U) T.L.				(전화번호:)	
④접수번호	⑤이력번호	16품종	⑪일령	18산란일		20중량규격	②비고	
	© 1122	910	© L G				e 1 -	
「축산법」	제35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외				
				れたい	년 ///	월 일		
			<i>∞</i> -1	신청인		명 또는 인)		
축산물품	·질평가사 구	하	(22) 나	리 신청인	(A	명 또는 인))		
		수수료	<u>-</u>			납부	확인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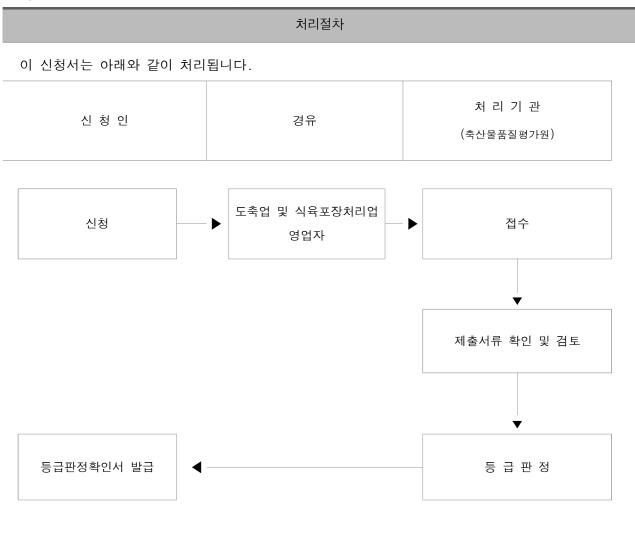
-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㉑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각각 적습니다.
- 2. ⑨ ~ ⑪란 및 ⑱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 3. ⑫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4. ⑭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적습니다.
- 5. ⑯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6. ⑯~⑱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7. ②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규칙 [별지 제37호의 축산 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	물([]달	計[]오리) 등급	판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	수일			처리기간 즉시	(並寸)			
	①성명			②생년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	<u>ō</u> :)			
	⑤업체명			⑥사업자	등록번호				
도축장,	⑦대표자								
식육포장									
처리업소	⑧소재지								
				(전화번	호:)			
	9성명		⑩생년월일	⑩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육	⑪농장명			⑫농장식┆					
농가									
0/1	⑬주소			'					
				(전화번	ō:)			
4 접수번호	⑤이력번호	16품목(부위)	⑪품종	(18) 수량	⑩중량규격	20비고			
Γ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형	행규칙 제38조제2		와 같이 신청합니다				
				l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②대리 신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	· 질평가사 귀하	<u>;</u>							
		 수수료			나	 부확인			
「축산법」 제	49조 및 같은 법 :		세2항에 따른 등급편	 !정 수수료	H				
				10mm×297mm[반	상지(80g/m²) 또는 중	[질지(80g/m²)]			

유의사항

- 1. ① ~ ④란 및 ⑨ ~ ⑱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⑳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각 적습니다.
-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 3. ⑫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4. ⑭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닭·오리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5. ⑮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6. ⑯란은 "닭도체", "부분육(부위명)", "오리도체"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7. ⑪란은 정확한 경우만 적습니다.
- 8. ⑩란은 "닭도체"와 "오리도체"의 경우만 적습니다.
- 9. ②한 단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축산물(계란・닭・오리)등급판정확인서



「추사버	제40조	민 간으	번 시해규치	제45조제1항에	[[다] 드근파저	결과를	아래와 간이	화이하니다
독근립니	7114011	ㅊ 듣匸	다 시행표적	세40조세 1 영예	때나 공비원장	242	어네가 달어	킥긴압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성	명			생년	크월일(사업자등록번	호)			
신청인	업소	논명		·							
	주	소									
도축장, 축산물가공 업소, 식용란	업치	ᆒ명					등급판정일	일 자		년 월	일
선별포장업 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소자	대지									
품목(쿠위)										
일련번호		이력반	호	수	:량		중량규격	-	품질등급	비	1
		님	·품처명			품목(부위)	개(수) <u></u>	또는 중량()	(g)	
납품내역											
품 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ORG	lines Description	1		ar s			The second secon	**************************************	- 10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Ē.
0	력번호									
7-	래정보	납품업:	체명	납품처명	병		부위명		중량(kg)	
	14107									
	성 명					농장	·식별번호			
①사육 정보	소재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업체명	도축일자								
②도축 정보	소재지									
	도축의뢰인									
	도축검사결과									
							I			
					중량	ļ:			급	
③등급	등급판정 결과	도체번호	품종	성별	(kg)		육질 (근내지		육량 (육량지수)	
정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 =	
④포장		포장처리	업체		포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포장처리일자 (HACC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처리 정보	업체명									
	업체명									
⑤인증		인증내	역		인	인증번호 비고				
정보	친환경축산물									
「축산법	」 제40조의2 및	L 같은 법 A	l행규칙 제	데46조의2제83	호에 따리	나 위	축산물기	H래정.	보통합증명서	를
┃ ┃바그하山』	-L									

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직인

발급 횟수: 발행일자:

[※]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 서 제공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



0	력번호							
7-	l래정보	납품업체명	E	남 품처명	처명 부위명		중량(kg)	
714161								
①사육	성 명				농장식	별번호		
정보	소재지				위해요소중 (HACCP) 적 발급	덕용 확인서		
	업체명				도축	일자		
②도축 정보	소재지							
	도축의뢰인							
	도축검사결과							
					ЩO	급		
③등급	등급판정결과	두수	1+	1+		2	등외	
정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요소중점관리기준	
④포장		포장처리업체		포	장처리일자	(HA	(HACC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처리 정보	업체명							
	업체명							
⑤인증		인증내역			인증번호		비고	
정보	친환경축산물							
「축산법	」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저	46조의2	제8호에	따라 위 축	^ફ 산물거래 [;]	정보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ił.							
						년	월 일	
		농림축산식	품부징	관 직	l인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 서 제공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오리)



	이력번호						
	기계되버	축종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품	목	수량
	거래정보						
ω 11.9	성 명			농장식별팀	번호		
①사육 정보	소재지			위해요소중점된 (HACCP) 적용 발급번호	확인서		
	업체명			도축일자			
②도축	소재지						
정보	도축의뢰인						
	도축검사결과						
	품목(부위)						
③등급 정보	세부내역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성	등급	비고
31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④포장	포장처	리업체		포장처리일자		(HACCI	소중점관리기준 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처리 정보	업체명						
	업체명						
⑤인증	인증	내역		인증번호			비고
^{생건} 등 정보	친환경축산물						<u> </u>
「축산법	 」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네46조의2제8.	호에 따라 위 특	 축산물거	래정도	본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디	<u>:</u> F						
					년	윧	실 일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직인

[※]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 서 제공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합니다.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_	1-1							
0	력번호							
기계되버		납품업체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품목	수량		
<i>).</i>	 내정보							
①농장 정보	성 명					농장식별번호		
	소재지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신청인							
②등급 판정 신청 정보	업체명							
	주소							
	축산물가공 영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0 —	식용란선별포 장업소,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소재지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적용 확인서 발급번호		
	품목							
③등급	비브미어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정보	세부내역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		
④인증		인증	등내역			인증번호	비고	
정보	친환경축산물							
「축산	「축산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8호에 따라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직인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 서 제공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